

#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설 명

이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회 선배·동료의원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자동차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차량’에 대한 용어정의를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에 보도통행이 금지된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도 통행 근절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명시함으로써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